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이용제한 내규

제정 2025. 11. 27. 내규 제83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내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시설(기성종합복지관, 산성주민복지관, 구즉문화센터)의 부정 및 악성고객에 대한 이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용제한’이라 함은 체육·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제한 대상자는 제한 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적용범위는 체육·복지시설 이용자에 한하며, 이용자란 등록회원과 1일 회원을 말한다.

제2장 이용제한

제3조(대상) ① 이용제한에 대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및 음주한 자 등 다른 회원에게 보건 및 시설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2. 이용요금을 내지 않거나, 부당한 감면, 무단 이용, 시설 이용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및 직원과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3. 회원 간 금전 거출을 강요하거나, 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경우
4. 회원 간 또는 직원(강사 포함)에게 폭언, 폭행, 비방 등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직원에게 갑질, 성희롱 발언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6.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친 경우
7.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8. 이용자가 공단 승인 등 대관 없이 사적 이용을 한 경우

9. 시설 내 무단 상거래 등 상업적 행위를 한 경우

10. 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수강한 경우

11. 협박, 폭언으로 회원 또는 직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12. 시설 내에서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를 범한 경우

13. 기타 공공질서 및 문란행위 등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② 이용제한 대상 중 사안별로 판단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부서장 판단하에 구두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2회를 넘지 아니한다.

제4조(이용제한 기간) 이용제한 기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이용제한 시설범위) 이용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 이용을 제한하며, 4개월 이상인 경우 체육 및 복지시설 전체 이용이 제한된다.

제3장 이용제한위원회

제6조(설치) 해당 시설 소관 처장은 내·외부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제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공단 고문변호사 및 처 내 해당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으로 하며, 사안별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 포함 최대 5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용제한 기간이 1년 이상되는 경우
2. 직원과 회원 또는 회원 간 폭행 또는 성범죄 처분이 내려진 경우
3. 이용제한에 따른 직원의 출입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불응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구두 및 횟수로 제한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경우

제9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이 발생한 부서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간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이용제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④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수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입사 전 법인 또는 개인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거나,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의 진술권 등) ① 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내규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사규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문화체육센터 운영 내규란 다음에 시설 이용제한 내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내규	시설 이용제한 내규

[별표]

이용제한 기간(제4조 관련)

구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기 간	1~3개월	4~6개월	7~11개월	1년 이상 (단, 제3조제1항제11호의 경우 1회 위반시 1년 이상, 제12호의 경우 1회 위반시 영구제한)

[별지 서식]

이 용 제 한 의 결 서(제9조 관련)

당 사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의 결		

년 월 일

이용제한 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